

장애가 있는 자녀가 정학 중에 있거나 퇴학을 권고 받는 경우

2014년 11월, 발행번호: 5563.03

귀하의 장애아가 행동상의 문제를 겪고 있거나 자녀가 다니는 지역 학군(이하 “학군”이라 한다)에서 정학 처분을 받고 있다든가 혹은 퇴학을 권고 받을 경우, 학군 측은 귀하의 자녀를 퇴학시키기 전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주와 연방의 특수교육 관련 법률들은 퇴학 대상으로 검토 중인 장애 학생들에게 일부 보호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거나 기타 관련 문제들로 인해 고려될 경우에 귀하의 자녀가 가진 권리에 관한 기초 정보를 일부 제공할 것입니다.

“정학”이란 어떤 학생이 조정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수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퇴학”이란 (1) 교원의 즉각적인 감독 및 관리 또는 (2) 총괄적인 감독에서 어떤 학생을 아예 배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정학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또는 관할 법정 또는 심의 담당관의 명령 없이 수업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연속으로 정학 또는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34 C.F.R. §300.530(b).

정학 조치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별도의 교칙 위반 사유에 따라 정학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아 전체 정학 기간이 학년 내 수업일 기준으로 연속 10일 이상 가산되거나 누적된

특수 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정학 기간은 수업일 기준으로 1회 연속 1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학 처분이 계속 누적되어 학적 변경에 준하는 어떤 양태가 나타날 경우에는 상기의 제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34 C.F.R. §300.536(a)(1),(2).

정학 조치가 불법적인 학적 변경 또는 퇴학에 더 가까운 양태를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인들로는 제적 기간, 해당 학생이 제적된 시간의 총 분량, 제적 처분일 간 근접성 그리고 일련의 정학 처분에 대한 학생 행동의 유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 34 C.F.R. §300.536(a)(1),(2)(iii).

일련의 정학 조치가 하나의 양태로 나타날 경우, 이러한 정학 조치들은 학적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4 C.F.R. § 300.536(a)(2). 일련의 정학 처분을 학적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특성화 교육 계획(IEP) 담당팀은 징후 판정 심사 회의(manifestation determination meeting) 일정을 계획해야 하며, 학적 변경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적용됩니다. 34 C.F.R. § 300.530(e).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 통학 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통학 버스 이용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학생 본인에 대한 특성화 교육 계획(IEP)에 대체 교통 수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학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교통비 부담 없이 대체 교통 수단을 무상으로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Cal. Ed. Code § 48915.5(c).

임시 대안 교육 환경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정학 기간 중 학교 또는 학군의 담당 교직원 은 그 학생을 일시적으로 다른 반/학교로 편성 및 이전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흔히 “임시 대안 교육 환경(interim alternative sett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적 기간은 수업일 기준으로 연속 10일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34 C.F.R. §300.530(b).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아 임시 대안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한 학년 당 누적 일수로 10일 이상 정학 처분을 받았다면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아야 합니다. 34 C.F.R. §§ 300.530(b)(2) 및 (d)(4), § 300.536.

학군은 해당 학생이 일반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학습 진도를 성취하고 본인의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한 학년당 정학 기간이 11^일째 되는 날에 학군에서 정학 대상 학생에게 FAPE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물론 그 학생은 본인이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본래의 정규 학급에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학 처분을 받은 그 학생은 정학과 관련된 근본적인 행동 수칙 위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의 행동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고안된 기능 행동 평가, 행동 중재 서비스 및 행동 수정 서비스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20 U.S.C § 1415 (k)(1)(D).

퇴학 및 징후 판정 심사

징후 판정 심사 회의는 어떤 장애아가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한 이유로 학적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학교 또는 학군 측이 해당 학적 변경을 정학 또는 퇴학 조치로 일컫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집해야 합니다. 20 U.S.C. §§ 1415(k)(1)(E), 34 C.F.R. § 300.530(e)(1).

징후 판정 심사 회의는 퇴학 결정을 야기한 문제의 행동이 해당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이 해당 아동의 장애와 직접적이면서도 상당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에 대한 특성화 교육 계획(IEP)을 학교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였는지 여부를 IEP 담당팀에서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 U.S.C. §§ 1415(k)(1)(E), 34 C.F.R. § 300.530(e)(1). 때로는 징후 판정 심사 회의를 일컬어 “징후 판정 심사 IEP” 또는 “퇴학에 관한 비상 IEP”라고도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징후 판정 심사 회의가 보류된 경우에도 10일 연속의 정학일수가 만료되면 본래 배정된 학급에서 수업을 다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행동 또는 행위가 무기 또는 약물과 관련된 것이거나 신체적인 중상을 초래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학교 측은 문제의 학생을 45일간 다른 수업 환경에 배정하는 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415(k)(1)(G), 34 C.F.R. § 300.530(f)(2), 300.530(g).

문제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에 속하는 경우

어떤 학생의 행동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장애의 징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IEP 담당팀은 해당 학생에 대해 기능 행동 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하며 기능 중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에 대해 그러한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IEP 담당팀은 문제의 행동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계획을 검토 및 수정해야 합니다. 34 C.F.R. § 300.530(f)(1).

또한 문제의 행동 또는 행위가 무기 또는 약물과 관련이 있거나 누군가의 신체적 중상을 야기하지 않았으며 혹은 학교 측과 학부모가 문제의 학생을 다른 학교/수업 환경에 배정하기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EP 담당팀은 해당 학생을 (정학일수 만료 후) 현재 학교/수업 환경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34 C.F.R. § 300.530(f)(2) 및 34 C.F.R. § 300.530(g).

여기서 “신체적 중상”이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각각 동반하는 신체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 (A) 상당한 수준의 사망 위험
- (B) 극도의 신체적 통증
- (C) 장기간 지속되면서 역력한 외모 손상
- (D) 신체 부위나 장기의 기능 또는 지능이 장기간에 걸쳐 상실되거나 저하됨. 18 U.S.C.A. § 1365(h)(3).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군에서 IEP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학군 측은 결손 또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4 C.F.R. § 300.530(e)(3).

문제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이 가진 장애의 징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IEP 담당팀은 (1)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혹은 그러한 행동이 해당 학생의 장애와 별 다른 관계가 없었고 혹은 (2)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에 대한 IEP를 이행하지 못한 학군 측의 과실로 인해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이 가진 장애의 징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학군 측은 이 학생에 대한 퇴학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학 제적 및 퇴학을 포함해 학적 변경 기간 또는 제적 기간이 한 학년당 누적일수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대안 교육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아야 합니다. FAPE 요구 사항은 해당 학생이 일반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학습 진도를 성취하고 본인의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군 측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34 C.F.R. §§ 300.530(b)(2) 및 (d).

속결 적법 절차 심의를 통해 징후 판정 심사를 요청

학군의 징후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귀하는 특수 교육에 대한 속결 적법 절차 심의를 통해 최종 판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속결 심의는 귀하가 그러한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수업일수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심의를 완료한 후 수업일수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심의 담당관으로부터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속결 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 측과 학부모는 함께 회동하여 심의 요청의 대상이 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 학부모와 학교 측이 모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기로 서면상 합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0 U.S.C. § 1415(k)(1)(H), 34 C.F.R. § 300.530(h) 및 34 C.F.R. § 300.532(c)(3).

해당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를 학군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와 별도로 심의하기 위해 정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귀하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참석하기 전에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속결 심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학군 측이 퇴학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명령할 것을 심의 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 담당관은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 심의가 완료된 후 최종 판정을 내릴 때까지 학군 측에 퇴학 심의 보류를 명령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적법 절차 심의가 계류되는 동안 학군 측과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학생은 현재의 학적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Cal. Ed. Code § 56505(d), 34 C.F.R. § 300.518. 이러한 관례를 일컬어 흔히 “학적 유지(stay-put)”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적 유지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 귀하의 자녀가 무기 또는 약물 사용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이 경우, 학군 측은 최대 45일 동안 귀 자녀의 학적을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4 C.F.R. § 300.530(g) 또는
- 2) 학군 측이 귀 자녀의 현재 학적 유지가 “학생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심의 담당관을 설득하는 경우, 심의 담당관은 최대 45일 동안 귀 자녀를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34 C.F.R. § 300.532(a) 및 (b).

“임시 대안 교육 환경”은 문제의 학생이 일반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학생 본인에 대한 IEP에 명시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4 C.F.R. § 300.530(d)(1). 귀 자녀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배정되더라도 심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또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학생을 배정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두 가지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이전에 대안 교육 환경에서 학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안 교육 환경에서 학적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심의 절차가 종료되기도 전에 언제든지 만료될 경우, 귀하와 학군 측이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귀 자녀는 본래의 정규 학급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학군 측이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귀 자녀를 대안 교육 학교에 배정하지 않은 경우, 귀 자녀는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정규 학적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0 U.S.C. §§ 1415(k)(4)(A), 34 C.F.R. § 300.533.

심의 담당관은 적법 절차 심의의 결과로서 학생의 학적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은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이 가진 장애의 징후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해당 학생의 원래 학적을 계속 유지할 것을 학교 측에 명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기, 약물 또는 신체적 증상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제적 처리된 학생에 대해 심의 담당관은 본인의 소견으로 볼 때 문제의 행동이 무기, 약물 또는 신체적 증상을 야기한 범행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교직원들이 문제의 학생을 제적하기 전에 그 학생이 애초에 출석했던 본래의 정규 학급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20 U.S.C. §§ 1415(k)(2) 및 (3)(B), 34 C.F.R. § 300.532(b).

학교 이사회의 퇴학 심의 절차

학군 측은 귀 자녀의 퇴학을 권고할 경우에 귀하와 귀 자녀를 관할 학군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로 회부하여 귀하의 자녀를 퇴학시켜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사회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심의는 교장이 귀 자녀를 퇴학시키기로 결정한 후 수업일수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소집됩니다. 이사회는

자체 심의를 소집한 후 수업일수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 해당 심의 또는 결정을 보류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Cal. Ed. Code § 48918(a).

이사회가 귀 자녀를 퇴학시키기로 결정할 경우, 귀하는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사회에 퇴학 결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l. Ed. Code § 48919

퇴학을 규율하는 학칙들은 다양하며 학군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군의 학칙 및 교육 방침 사본은 귀 자녀가 소속된 학군 측에 문의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교육법(Cal. Ed. Code) §§ 48916~4892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학군 측이 특수 교육을 받을 귀 자녀를 평가하지 않았으며 귀하의 소견으로 볼 때 귀 자녀가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귀하의 자녀가 학군의 징계 조치를 야기한 문제의 행동을 하기 전에 장애를 갖고 있었음을 학군 측에서 인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수 교육 대상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퇴학 전 보호 수단을 귀 자녀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20 U.S.C. §1415(k)(5), 34 C.F.R. §§ 300.534(a) 및 (b). 귀 자녀가 문제의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다음에 열거한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가 발생했다면 학군 측은 그러한 비행이 발생하기 전에 귀 자녀의 장애를 인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 귀 자녀에게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뜻을 담당 교사 또는 그 외 교직원들에게 밝힌 경우(학부모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이거나 학부모가 그러한 소견을 서면으로 알릴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2) 귀하가 귀 자녀를 특수 교육 대상자로 평가할 것을 요청한 경우 또는

3) 교사나 그 외 교직원들이 귀 자녀의 행동 또는 학업 수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소속 학군의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상급 교육 공무원 등에게 피력한 경우.

귀하의 소견으로 볼 때 학군 측이 문제의 퇴학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귀 자녀의 장애를 인지했다고 판단될 경우, 귀하는 퇴학 조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속결 심의 절차를 요청해야 하며, 귀 자녀의 장애에 대한 학교 측의 사전 인지와 관련하여 상기에 제시한 4가지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입증할만한 모든 서면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군의 징후 판정 및 퇴학 절차에 대한 귀하의 이의 절차에서 주요 이의 신청 기한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한에 관한 자세한 법률 상담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지원 또는 설명을 요구해야 할 경우, 행정심의국(OA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의국은 귀하의 법률 문제를 제외한 그 밖의 일반적인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특수 교육 옹호를 전담하는 변호사 및/또는 중재자들의 추천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심의국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Special Education Divis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전화: 916-263-0880
팩스: 916-376-6319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의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저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설문 조사지 작성\]](#)

법률 상담은 전화 800-776-5746으로 문의하거나 [상담 요청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916-504-5800(북부 캘리포니아), 213-213-8000(남부 캘리포니아)으로 전화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재정 지원자들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를 방문하십시오.